

# 서울교통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(김현기 의원 발의)

|          |      |
|----------|------|
| 의안<br>번호 | 2699 |
|----------|------|

발 의 년 월 일: 2025년 05월 21일  
발 의 자: 김현기 의원(1명)  
찬 성 자: 경기문, 김용호, 김인제,  
김종길, 문성호, 옥재은,  
윤종복, 이민석, 이종환,  
이효원, 황유정 의원(11명)

## 1. 제안이유

- 서울교통공사 사장이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주무부서의 장과 사전에 협의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서울교통공사에 대한 감독 및 관련 업무 추진의 행정적 효율성을 증진하고자 함

## 2. 주요내용

- 가. 공사 사장이 예산편성, 소송 업무 등 중요한 사항에 대해 사전에 주무부서의 장과 협의하는 규정을 신설함(안 제31조제3항)

## 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지방공기업법
- 나. 예산조치 : 해당사항 없음 (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별첨)
- 다. 기타 : 신 구조문 대비표

서울특별시조례 제     호

## 서울교통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교통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의2제1항을 제6조 제1항으로 한다.

제31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③ 사장은 제2항 외에 예산편성, 소송 업무 등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사전  
에 주무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.

#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 · 구조문대비표

| 현<br>행                     | 개<br>정<br>안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제5조의2(의회에 대한 보고) ①<br>(생략) | 제5조의2(의회에 대한 보고) (현<br>행 제1항과 같음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제31조(감독) ① · ② (생략)        | 제31조(감독) ① · ② (현행과 같<br>음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<신설>                       | ③ 사장은 제2항 외에 예산편<br>성, 소송 업무 등 중요한 사항에<br>대하여 사전에 주무부서의 장과<br>협의하여야 한다. |

# 서울특별시 서울교통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

##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

### 1. 판단 근거

- 서울특별시 서울교통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31조(감독)제3항 “사장은 제2항 외에 예산편성, 소송 업무 등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사전에 주무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”를 신설하기 위해 개정하려는 것으로 서울시의 재정 수입 순감소나 재정 지출 순증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 비용추계 대상이 아님

### 2. 작성자

|           |         |
|-----------|---------|
| 시의회사무처    | 재정분석담당관 |
| 담 당 관     | 주병준     |
| 추계세제팀장    | 김중헌     |
| 추 계 분 석 관 | 김지혜     |

☎ 02-2180-7952  
e-mail : kjh0123@seoul.go.kr

**※ 이 서류는 의안 발의 참고 자료입니다.**